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6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공휴일’ 날은 제발 놀아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에 휴일은 꼬박꼬박 지켜라’ 대부분의 인쇄회사가 자사의 물건을 직접 기획하고 팔기보다는 수주 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고객이 원한다면 1일 8시간 근무가 끝난 후에도, 그리고 일요일 및 휴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바라보는 이 문구는 인쇄협회가 회원사에 권고, 전 회원사가 채택한 안으로 그 시기가 자그마치 45년 전의 일이다.

1959년 6월10일에 인쇄협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인쇄협회는 모든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른바 ‘취업규칙’을 발표한다. 45년 전에 발표된 취업 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1시간은 40분으로 하되 전후 10분씩의 여유를 준다. 둘, 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하되, 매주 일요일, 삼일절 제현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 설 추석 크리스마스 노동절 등 정휴(定休)일을 휴일로 한다.

신문은 인쇄협회와 회원사들이 이와 같은 규칙을 정한 이유로 ‘각 공장의 휴일을 통일하고,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날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달리 근무할 경우 종업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다. 45년이 지난 지금 주5일 근무기업이 생겨날 만큼 인쇄업체의 근무여건은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 기업의 경우 45년 전의 근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동당인쇄의 화재 사건

1959년 6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90번지에 위치한 대동당인쇄주식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인해 대동당인쇄 제책실 직원 3명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족보편찬회사 직원 3명이 사망했으며, 3층에서 뛰어내린 4명의 여직원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2마력 짜리 재단기 동력 모터의 과열로 밝혀졌는데 발화지점이 출입문 바로 앞인지라 출입문 쪽이 먼저 불에 타면서 봉쇄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컸다. 사고 당시 대부분의 창문은 도난 방지를 위해 쇠창살의 형태로 막혀 있어 종업원들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았으며, 정문이 아닌 2층으로 바로 연결된 계단 출입문도 이날 따라 밖에서 잠겨 있어 탈출이 용이치 않았다. 그러나 탈출 가능했던 3층 창문의 경우 지상에서 7미터 높이에 위치해 있어 이곳을 통해 뛰어 내린 4명의 여직원들이 모두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일부 남자 직원들의 강력한 대처로 몇 개의 도난 방지용 쇠창살이 뜯겨지고 옥상으로 통로가 확보되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화재 발생 후 인쇄협회는 전 공장에 반드시 출입문 외에도 비상구를 만들도록 권고 조치했다.

국정교과서 무리한 시설증대 시도

1966년 6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대일청구권기금 중 재정차관에 의한 중소기업 및 기계공업 육성 자

금 신청서를 제출한 국정교과서주식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싣고 있다. 인쇄인들은 국정교과서의 시설증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별도의 시설 없이 6개의 민간회사에 위탁의 형태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시설을 증설할 경우 교과서 인쇄 물량이 줄어든 6개의 민간회사가 일반 인쇄회사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 질서를 파괴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정교과서 자체보다는 국정교과서 시설 증대의 여파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6개 위탁 회사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 셈인데 이들 6개 위탁 회사들은 국정교과서와 인쇄업체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국정교과서의 시설 증대 행위는 실컷 이용해 먹고 배부르니깐 걷어차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고, "시설을 증대하기 이전에 국정교과서 때문에 오랫동안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위탁회사의 재무상태부터 살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교과서가 사용을 신청한 한일청구권기금 중 재정차관에 의한 중소기업 및 기계공업육성자금은 1965년 이루어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의 금액으로 제공한 것으로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바탕으로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민간기업 차관 1억 달러 등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된 기금이다.

'직지' 보다 앞선 금속활자본(?) 발견

1973년 6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세계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만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얼마전 작고한 전 충남대 윤병태 교수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발견한 '청량답순종심요법문' 이것이었다. 당시 인쇄문화시보에 실린 윤병태 교수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이 책에 나와있는 '중봉대부 승복사 별불하'라는 문구를 통해 '중봉대부'는 고려 충렬왕 때만 나오는 벼슬이며 '별불하'는 원나라의 신하로 1297년에서 1298년에 고려를 다녀간 신하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책의 간행년도가 1297년에서 1298년 사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쇄문화시보에는 당시 천혜봉 교수와 손보기 교수 등도 이 문서를 확인하고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간주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는 '청량답순종심요법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려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 '직지'의 경우처럼 정확한 간행년도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는 윤병태 교수가 발견한 한 권의 책과 '1531년 송광사'라고 간기가 적혀 있는 또 다른 한 권 등 총 두 권의 '청량답순종심요법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윤병태 교수가 발견한 문제의 책에 대해 '판 차 木板本, 壬辰(1592)前 刊本이며, 頁 1面은 活字版 같은'이라고 적고 있다.

인쇄업 죽이는 가정의례법률

1969년 3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고, 이어 1973년 3월 13일 전문 조항을 개정해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정에서의 의례를 간소화한다는 대통령의 취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청첩장, 부고장 발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가정의례 준칙 때문에 이를 주요 영업 품목으로 하는 소규모 인쇄업체들은 크나큰 경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1973년 6월 15일 발행된 인쇄문화시보에서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결혼청첩장, 부고장 인쇄물이 자취를 감추었고, 경향각지의 청첩장 부고장 명함 등을 주요상으로 인쇄를 해오던 소규모 인쇄업체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라고 적고 있다. 신문은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청첩장 부고장을 인쇄, 개별 고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5월 하순부터 이미 청첩장 인쇄 의뢰는 뜸한 편이었고, 6월부터는 부고장까지 완전히 자취를 감춤으로써 별다른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들 인쇄물에만 의존 운영해 오던 소규모 인쇄업체에겐 운영 면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준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당시 시행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첩장, 부고장을 인쇄 개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청첩 부고내용의 사후 고지나 인쇄물이 아닌 서신고지는 허용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용우기자〉